

# 감사 관련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

발의일: 2022년 8월 24일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

작성자: 감사원장 심형주

발의 근거: 학생회칙 제185조, 제190조제1항, 제191조제4항제1호

## 배경

감사시행세칙 제 3장 21조

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 피감기관 또는 그 간부가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할 수 있다.

감사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며,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감사원은 조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

또한, 현재 감사원 내의 역할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됨.

감사원 내의 역할 분배 및 위 세칙을 전담할 인원을 총원하고자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.

## 목적

- 21조에 대한 본회 회원들의 인식 개선 및 제보 촉진을 위한 인원 총원
-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, 해당 제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, 제보자에게 진행상황 공유 등을 담당할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기 위함

## 신구조문대비표

감사 관련 학생회칙 일부개정안

제124조(구성) 감사원은 <u>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	제124조(구성) 감사원은 <u>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. 감사위원의 수는 세칙으로 정한다.</u>
---	--

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

<p><b>제9조(구성)</b>      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<b>6인</b>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<b>제9조(구성)</b>      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<b>8인</b>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
<p><b>제10조(위원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. 단, 후보자가 <b>3명</b>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<b>3명</b>으로 압축한다.</li> <li>2. 감사위원 <b>6명</b> 중 <b>3명</b>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, 나머지 <b>3명</b>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.</li> <li>3.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<b>15일</b>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총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.</li> </ol>	<p><b>제10조(위원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. 단, 후보자가 <b>4명</b>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<b>4명</b>으로 압축한다.</li> <li>2. 감사위원 <b>8명</b> 중 <b>4명</b>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, 나머지 <b>4명</b>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.</li> <li>3.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<b>15일</b>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총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.</li> </ol>